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 주요업무보고



202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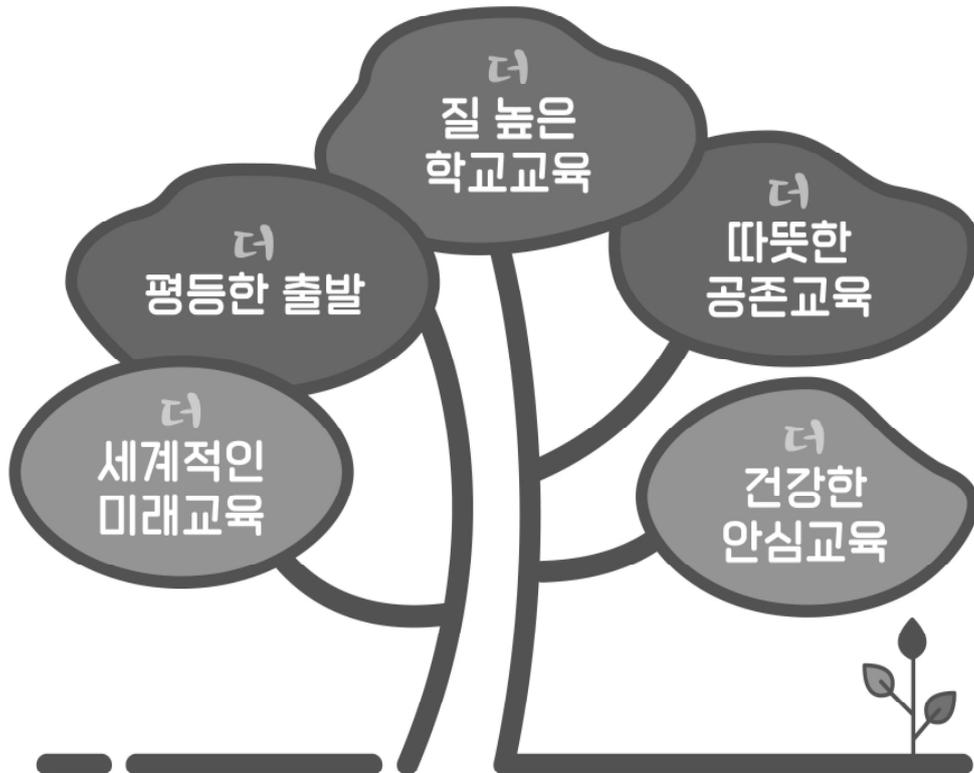
서울특별시교육청

#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 교육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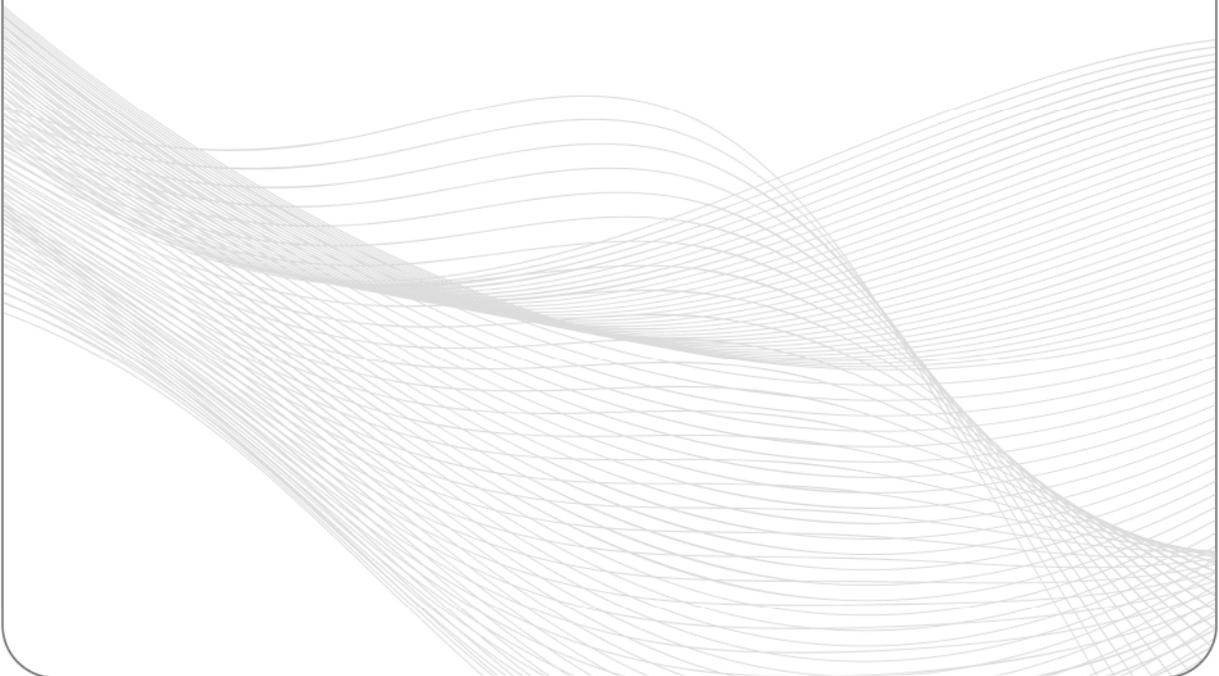
생각이 자라는 교실  
함께 성장하는 학교  
미래를 여는 교육

## 정책 방향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 일반 현황





# 일반 현황

## □ 조 직

5과 25담당

### 평생진로교육국 구 자 희



## □ 정·현원

(’23.9.30.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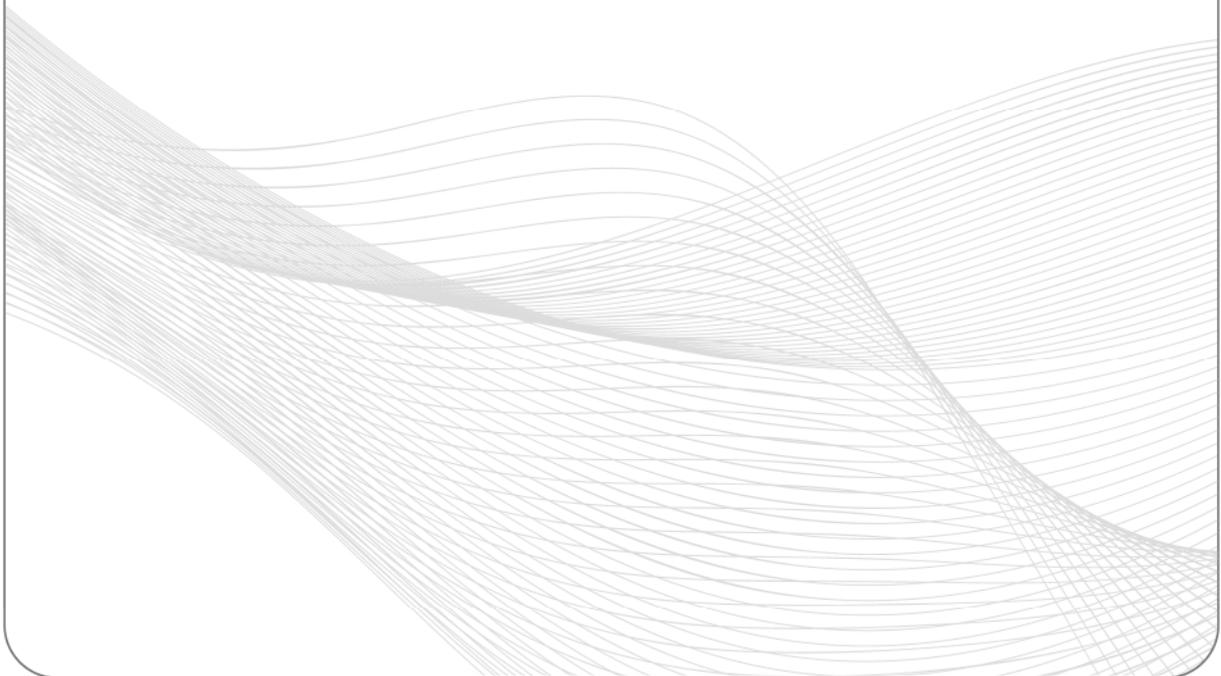
구분	일 반 직								교육전문직				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유아	초등	중등	소계	
정원	-	3	10	30	44	9	0	96	1	20	47	68	164
현원	-	3	10	29	35	14	1	92	1	23	44	68	160

## □ 주요 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평 생 교 육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및 학력인정 문해교육 업무 지원</li> <li>○ 장애성인 및 학교평생교육 지원</li> <li>○ 초·중·고졸 검정고시 운영</li> <li>○ 도서관·평생학습관 발전지원</li> <li>○ 퇴직교직원 사회공헌 봉사활동 지원</li> <li>○ 학원 지도·감독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li> <li>○ 비영리(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li> </ul>
민 주 시 민 생 활 교 육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가꿈의 학교문화 조성</li> <li>○ 학교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 및 통일교육 지원</li> <li>○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li> <li>○ 대안교육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li> <li>○ 성차별·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li> <li>○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탈북학생 지원</li> <li>○ 학생(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li> <li>○ 학생 봉사활동 운영 지원</li> </ul>
진 로 직 업 교 육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 단위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li> <li>○ 산업수요에 적합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li> <li>○ 일반고 직업교육 운영</li> <li>○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 사업 운영</li> </ul>
체 육 건 강 예 술 교 육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체육 및 생존수영교육 관련 업무</li> <li>○ 학교예술교육 업무</li> <li>○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li> <li>○ 학교(유치원 포함) 급식 지원</li> </ul>
특수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 운영 기획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li> <li>○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직업교육 업무</li> <li>○ 현장중심 통합교육 활성화 지원 및 장애공감문화 조성</li> <li>○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li> </ul>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 사업 개요

#### ○ 목적

- 인권교육 활성화로 서로 존중하고 행복이 실현되는 학교 문화 조성
- 학생인권 상담과 구제 활동 강화를 통한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

#### ○ 주요 내용

- 학교 학생인권교육 활성화 및 교육공동체의 소통 인권역량 강화 지원
- 학생인권 상담·권리구제 및 현장 맞춤형 컨설팅 운영
- 교육감 입안 자치법규 및 주요 정책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시행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 시기	물량
교원공동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수 운영	연중	초등교원 직무연수 22명 중등교원 직무연수 27명 초·중등 교원 자율연수 210명 초·중등 교(직)원 자율연수 439명
학생인권 관련 협의체 및 지원단 구성·운영	연중	지원단 2팀
현장중심의 학생인권 사안처리 및 컨설팅	연중	학생인권 상담: 400건 권리구제: 200건 학생인권 컨설팅: 60개교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제도 정착	연중	교육감 입안 자치법규 및 정책(사업) 45건

### 학생인권조례 주요사업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최근 3년간 예산현황		
	2023	2022	2021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0	86,515	91,102
학생인권증진지원	0	274,480	255,360
교원학생인권역량강화연수	0	82,480	80,102
합계	0	443,475	426,564

# 1

## 학교 학생 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공동체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 사업 개요

- 사업 대상: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 목표
  - 교육공동체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도모하여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교육공동체의 인권 교육 역량 강화
- 주요 내용
  - 학교 인권 교육계획 수립 지원
  - 인권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및 교직원 연수 계획·운영
  - 인권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 추진 현황 및 실적

- 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인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학기 초 학교별 인권 담당자 지정 및 운영
  - 학교 인권 교육 운영계획안, 보호자 교육 자료 등을 학교로 제공
  - (학생) 학기당 2시간, (교직원) 연간 2시간, (보호자) 연 1회 이상 교육
- 2023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 「영화로 만나는 인권 이야기」
  - 기간: 2023. 6. 13. ~ 7.5. (매주 화, 수 총 8회)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내 상영실(11층)
  - 연수 대상: 초·중·고·특수 교원 (210명 이수)
- 2023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직)원 연수 ‘인권의 눈으로 서울을 보다.’
  - 기간: (1차) 2023. 5. 1.(월) ~ 5. 31.(수), (2차) 2023. 9. 1.(금) ~ 10. 6. (금)

- 내용: 인권 관련 역사적 현장(서대문, 정동, 남산, 백악산)을 돌아보며 학교 인권교육과 연계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연수 대상: 초·중고·특수 교(직)원 (439명 참여)
- 2023 학생 인권 교육 교원역량 강화 직무연수 「학교 인권 교육 레시피」
  - 운영 기간: 2023. 8. 7. ~ 8. 9.
  - 내용: 아동 권리 이해 및 인권 감수성 수업 방안
  - 연수 대상: 초등(특수포함) 교원 (22명 이수)
- 2023 학교 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과 교원연수
  - 운영 기간: 2023. 10. 14. ~ 10. 21.
  - 내용: 아동 권리 이해 및 인권 감수성 수업 방안
  - 연수 대상: 중등 사회과 교원 (27명 참여 중)

※ 인권 역량 강화 교(직)원 연수 운영 현황 (최근 3개년)

연도	연수명	이수	비고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과 교원 연수</li> <li>- 중등 교원 1과정</li> </ul>	중등 사회과 교원 (27명)	직무연수 (1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의 눈으로 서울을 보다’ 교원 연수</li> <li>- 초·중등 통합 2과정</li> </ul>	초·중등 교(직)원 (439명)	자율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실 속 학생인권 교육을 위한 레시피</li> <li>- 초등 1과정</li> </ul>	초등 교원 (22명)	직무연수 (1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li> <li>‘영화로 만나는 인권 이야기’</li> <li>- 초·중등 통합 8차 운영)</li> </ul>	초·중등 교원 (210명)	자율연수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의 눈으로 서울을 보다’ 교원연수</li> <li>- 초·중등 통합 3 과정</li> </ul>	초·중등 교(직)원 (422명)	자율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실 속 학생 인권 교육을 위한 레시피</li> <li>- 초·중등 각 1 과정</li> </ul>	초·중등 교원 (42명)	직무연수 (1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 교육 아이디어</li> <li>- 초·중등 각 1 과정</li> </ul>	초·중등 교원 (20명)	직무연수 (1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친화적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경영자 (M.B.A) 연수</li> <li>- 초·중등 각 1 과정</li> </ul>	초·중등 교감, 교장 (66명)	직무연수 (1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션으로 인권을 디자인하다</li> </ul>	교직원	특강

연도	연수명	이수	비고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실 속 학생 인권 교육을 위한 레시피 - 초등, 중등 각 2 과정</li> </ul>	초·중등 교원 (88명)	직무연수 (1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 친화적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경영자 (M.B.A) 연수 - 초등, 중등, 각 2 과정</li> </ul>	초·중등 교감, 교장 (80명)	직무연수 (1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사와 함께하는 기후 위기와 인권 특강</li> </ul>	인권교육지원단 학생인권위원회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구석 1열 인권 movie talk concert</li> </ul>	교직원	특강

○ 유·초·중·고 학생, 보호자, 교직원 인권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인권과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를 유기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콘텐츠 (ppt, 교수·학습과정안, 동영상 자료) 통합 자료

※ 주요 인권교육 개발 자료 목록

연도	자료명 및 대상	자료 내용	유형
2022	학생인권조례 “그때 그랬지” (학생, 교원,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시행 이후 학교 교육 현장과 가정에서의 변화 안내 - <a href="https://youtu.be/E44MDsIFufE">https://youtu.be/E44MDsIFufE</a></li> </ul>	동영상 (13분)
	우리 모두는 동등한 인격체 (학생, 교원,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인권 뿐 아니라 학교 생활, 가정 생활에서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모두의 인권 에피소드1] <a href="https://youtu.be/4ACpbVph78U">https://youtu.be/4ACpbVph78U</a> [모두의 인권 에피소드2] <a href="https://youtu.be/YMFnFZIOc_I">https://youtu.be/YMFnFZIOc_I</a></li> </ul>	동영상 (13분) (10분)
	한 권으로 끝내는 학생인권교육 (중학생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 기반 학기당 2시간 이상 교육 자료 활용 가능 1~3학년, 학년별 4차시 교육 PPT - 1차시 나의 권리 알아보기 - 2차시 학생인권조례 살펴보기 - 3차시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 4차시 사례기반 토론.토의</li> </ul>	PPT 활용안내서 (학년별 4차시)
2021	한 권으로 끝내는 학생인권교육 (초등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 기반 학기당 2시간 이상 교육 자료 활용 가능 1~6학년, 학년별 4차시 교육 PPT - 1차시 나의 권리 알아보기 - 2차시 학생인권조례 살펴보기 - 3차시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 4차시 사례기반 토론.토의</li> </ul>	PPT (학년별 4차시)
	학생인권 연수자료 (교직원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급별 교원대상 학생인권 연수자료 (50분 기준, 2차시 분량) - 1차시: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이해하기 - 2차시: 학생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사례 살펴보기</li> </ul>	PPT (진행용, 진행 시나리오)

연도	자료명 및 대상	자료 내용	유형
	(학생인권 이터닝) 보호자를 위한 학생인권교육	학생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인권 감수성 향상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hBm_dbIN3T8&amp;t=220s">https://www.youtube.com/watch?v=hBm_dbIN3T8&amp;t=220s</a>	동영상 (27분)
2020	인권교육자료 (유치원)	인권교육자료 (유아, 교사, 보호자, 일반종사자용)	PDF
	혐오표현 예방 (초·중)	즐거운 학교생활 뮤직비디오 (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ulv7a9bU13w">https://www.youtube.com/watch?v=ulv7a9bU13w</a> )	동영상 (2:40)

- 2023 학생 인권 교육 지원단 구성·운영 (60명)
    - 대상: 교원 지원단과 시민단체 지원단으로 구분
    - 위촉 기간: 2023. 4. 18. ~ 2024. 2. 29.
    - 교원 지원단: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희망·추천자 (29명)
    - 시민단체 지원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교육 유관 기관 위촉 강사 (31명)
    - 주요 역할
      -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에 학교장 및 교육공동체의 책무로 명시된 학교 단위의 학생 인권 교육 강의
      -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및 자문, 검토
    -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워크숍 운영 (대상별 각 3회)
- ※ 2023 인권교육지원단 현황

구분	이름	소속	구분	이름	소속
교원	이○○	서울강빛초등학교	시민 (단체)	손○○	국가인권위원회
	오○○	서울대치초등학교		유○○	국가인권위원회
	이○○	서울동답초등학교		한○○	국가인권위원회
	홍○○	서울매현초등학교		오○○	국가인권위원회
	우○	서울목동초등학교		이○○	국가인권위원회
	이○○	서울발산초등학교		손○○	국가인권위원회
	백○○	서울송미초등학교		한○○	국가인권위원회
	설○○	서울신암초등학교		김○○	사단법인 사람사이로
	이○○	서울신정초등학교		고○○	사단법인 사람사이로
	정○○	서울영도초등학교		김○○	시민모임 청!아대가자
	김○○	서울영풍초등학교		조○○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구분	이름	소속	구분	이름	소속
교원	김○○	서울오금초등학교	시민 (단체)	강○○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이○○	서울용마초등학교		박○○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연○○	서울우솔초등학교		이○○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전○○	서울유현초등학교		전○○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서○○	서울창일초등학교		김○○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허○○	강현중학교		장○○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이○○	경서중학교		이○○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강○○	경희여자중학교		신○○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김○○	세화여자중학교		강○○	인권지킴이 아이즈
	문○○	양서중학교		김○○	어린이책시민연대
	이○○	옥정중학교		박○○	우리동네노동권찾기
	김○○	원촌중학교		오○○	인권연대
	박○○	경문고등학교		조○○	인권연대
	탁○○	광영고등학교		조○○	인권연대
	김○○	서울디자인고등학교		박○○	장애인권옹호기관
	우○○	선사고등학교		홍○○	참교육학부모회
	강○○	수도여자고등학교		윤○○	참교육학부모회
	신○○	홍익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강○○	참교육학부모회
				문○○	푸른나무재단
				정○○	프리랜스

-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우수교 및 유공 교원 표창 (교육감 훈격)
  - 목적: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공적이 있는 학교 적극 발굴 및 학생 인권 교육 유공 교원을 발굴 포상하여 교원의 사기 고취
  - 기준: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 교육 활성화, 인권 보호, 교육공동체 인권 역량 강화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
  - 대상: (2022년) 우수학교 1교 표창, (2023년) 우수학교 2교, 교원 2명 표창 예정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항목	최근 3년 예산 현황		
	2023	2022	2021
학생 인권 증진지원	0	156,180	156,180
교원 인권 역량 강화 연수	0	82,480	82,480
합계	0	238,660	238,660

## 향후 계획

-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2023. 10.)
-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우수학교 및 유공교원 선정 (2023. 11.)
- 지역사회 유관기관 지속적 발굴을 통한 인권교육 저변 확대 (연중)

## 2

## 학생인권기구 운영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

(학생참여단) 학생참여 활성화 및 학생 관점의 인권과 교육정책을 위해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운영

### □ 사업 개요

#### ○ 학생인권위원회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
- 임기: 2022.10.20. ~ 2024.10.19.(2년) (연임가능)
- 회의: 정기회(4회), 임시회(수시)
- 인원: 총 19명

#### ○ 학생참여단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7조(학생참여단)
- 임기: 2023.4.1. ~ 2024.3.31.(1년)
- 회의: 정기회(2회), 임시회(수시)
- 인원: 총 99명

### □ 학생인권기구 구성 현황

#### ○ 제6기 학생인권위원회

구분	외부 전문가	시민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	학생 참여단	서울시 의원	공무원	계 (명)
본청	7	2	3	1	2	2	2	19

#### ○ 제12기 학생참여단

구분	학생참여단 구성(명)			
	초	중	고	계(명)
본청	22	49	28	99

**위원 명단**

○ 학생인권위원회 (19명)

번호	이름	영역	성별	소속
1	윤○○	외부 전문가 (7명)	여	학교법인 충암학원 이사장
2	이○○		남	전 교육연구정보원장
3	박○○		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유엔아동인권연구소
4	함○○		여	시립 아하!청소년문화센터
5	마○○		남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여성아동인권소위
6	전○○		남	하나고등학교 교원(고용휴직 중)
7	이○○		여	청소년정책제안위원회 청소년대표
8	고○○	시민 (2명)	남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학교희망교육
9	김○○		여	초/중/고등학교 금연교육 및 출장강의
10	이○○	학부모단체 (1명)	여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11	김○○	교원 단체 (3명)	남	봉영여자중학교 교사
12	이○○		남	이화여자병설미디어고등학교 교사
13	김○○		남	서울강덕초 교사
14	김○○	교육 위원회 (2명)	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5	전○○		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6	이○○	공무원 (2명)	남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관
17	박○○		남	대외협력담당관 사무관
18	이○○	학생 (2명)	여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3학년
19	김○○		여	월촌중학교 3학년

**주요역할**

○ 학생인권위원회

-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 학생인권이 증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 및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 및 권고
-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권고

○ 학생참여단

- 교육감의 학생인권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추진

회의 현황

○ 학생인권위원회

연번	개최일	회의 안건	비고
1	2023-01-18	제6기 학생인권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안) 외 3건	임시회
2	2023-02-16	학생인권교육센터 제3대 학생인권옹호관 임명 동의(안)	정기회
3	2023-04-04	2022년 4분기 학생인권 권리구제 등 현황 보고 외 2건	임시회
4	2023-07-12	2023년 상반기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보고 외3건	정기회
5	2023-08-16	2023년 2분기 학생인권 권리구제 등 현황 보고 외 2건	정기회
6	2023-09-2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생인권영향평가	임시회

○ 학생참여단

구분	회의 개최일	회의 안건	비고
1	2023-01-14	학생참여단 규정 개정	정기회
2	2023-07-22	제12기 학생참여단 정책제안 관련 논의	정기회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항목	최근 3년 예산 현황		
	2023	2022	2021
학생인권위원회운영	0	19,635	15,550
학생참여단	0	33,080	34,220
합계	0	52,715	49,770

## □ 향후 계획

- 학생인권관련 심의·자문 및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권고
- 학생참여단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3 자치법규 · 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3조(학생인권영향평가)에 근거하여, 교육감이 제정·입안하려는 자치법규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권고

#### 사업 개요

- 대상: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자치법규나 주요정책 등
- 내용: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학생인권위원회에서 사전에 평가하고 의견 제시
- 시기: 2023. 1 ~ 12월

#### 평가 시기

- (자치법규) 법제심사 전 사업부서에서 학생인권교육센터에 평가 의뢰
- (정책사업) 정책(사업) 계획 수립시 의뢰

#### 추진 실적 및 결과

구분	자치법규	정책 및 사업	비고	
실시건수	34건	11건 (진행중)	2023.10. 현재	
실시결과	원안동의	33건		0건
	개선권고	1건		0건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항목	최근 3년 예산 현황		
	2023	2022	2021
학생인권영향평가	0	14,220	14,480
합계	0	14,220	14,480

#### 향후 계획

-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지속적인 안내를 통한 내실있는 제도 운영

# 4

##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학생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시정 및 재발방지 등 권리구제 조치를 통한 학생인권의 보호 및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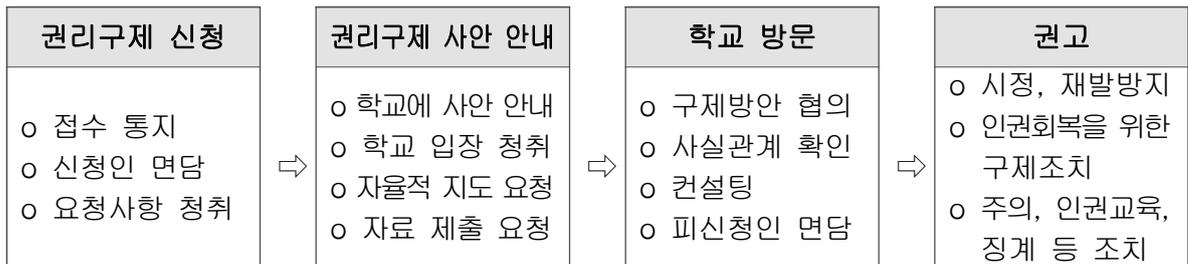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학생인권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학생인권침해를 사전예방하고 학교를 지원

### □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 목적: 학생인권 상담과 권리구제를 통한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
- 시기: 연중 상시
- 대상: 학생, 보호자, 교(직)원 등 누구든지
- 주요내용
  - (학생인권 상담) 4개 권역 인권조사관 운영

동부/성동 · 광진/강동 · 송파 ☎ 02-3999-081	북부/중부/성북 · 강북 ☎ 02-3999-082
서부/강서 · 양천 ☎ 02-3999-083	남부/강남 · 서초/동작 · 관악 ☎ 02-3999-084

- (학생인권 권리구제)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시정 및 재발방지 안내 등



- (분기별 보고 및 사례 공표) 분기별 보고 및 학생인권 권고 사례 홈페이지 게시

※ 참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888호, 2021.3.25., 일부개정)

제27조(상담 및 조사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47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제48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생략”

## □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인권 컨설팅 실시

- 목적: '현장중심'의 학생인권 사안 처리 및 인권침해 사전 예방
- 시기: 2023. 4월 ~ 12월
- 대상: 60개교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상벌점제 규정)와 관련한 컨설팅이 필요하거나 희망하는 학교
- 운영방법: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와 컨설팅단 구성

## □ 학생인권 인식 확산 및 홍보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 발송
  - 목적: 학생인권교육 및 홍보를 위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시기: 매년 3월
  - 대상: 학생 및 보호자
  - 방법: 학교 홈페이지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전문 게시,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례 전문 등 가정통신문 안내, 학생인권 관련 최근 결정례 등 반영
- 학생인권 가이드 보급
  - 권리구제 및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학교 방문 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해설서 등 관련 자료 배부
-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협의회 참석
  - 시도교육청 학생인권 네트워크 운영
  - 보호자, 교원, 청소년, 인권단체 등과 간담회 진행
- 학생인권 증진 행사 운영
  - 매년 1월 26일 학생인권의 날 행사 운영

○ 비고: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변동 운영될 수 있음

※ 참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888호, 2021.3.25., 일부개정)

제32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② 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제46조(공청회 등)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추진실적

○ 연도별 인권상담 현황(2018~2023.8)

- 상담 현황

구분	연도별 건수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	
인권상담	974	684	193	401	493	282	3,027

- 유형별 상담 현황

상담유형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	합계
차별	27	23	11	10	12	4	87
체벌	126	81	17	35	47	12	318
언어폭력 등	94	114	27	77	84	49	445
성폭력	6	1	0	1	0	0	8
기타	53	30	19	26	68	27	223
위험	1	3	0	1	0	0	5
학습	22	41	5	22	14	10	114
정규교과외	29	2	3	3	3	1	41
휴식권	3	10	1	3	11	6	34
문화권	0	0	0	0	0	0	0
개성	55	23	12	41	34	22	187
사생활	71	42	11	23	36	11	194
개인정보보호	23	20	11	10	20	10	94
개인정보열람	0	2	0	1	1	1	5
양심·종교	10	11	0	6	10	7	44
의사표현	2	4	2	0	0	0	8
자치활동	15	9	2	8	8	1	43
학칙제·개정	7	2	2	0	1	1	13
정책결정	1	1	1	3	0	0	6

상담유형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	합계
학교복지	1	2	0	0	1	0	4
교육환경	10	3	1	1	3	5	23
급식	2	0	0	0	0	0	2
건강	17	7	1	3	7	2	37
징계절차	117	82	16	19	28	36	298
권리수호	0	0	0	9	0	1	10
상담조사청구	5	5	0	1	3	0	14
소수자권리	33	3	2	2	1	0	41
기타	161	127	42	89	81	70	570
학교폭력	83	36	7	7	20	6	159
<b>총 합계</b>	<b>974</b>	<b>684</b>	<b>193</b>	<b>401</b>	<b>493</b>	<b>282</b>	<b>3,027</b>

○ 연도별 권리구제 현황(2018~2023.8)

- 접수 현황

구분	연도별 건수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	
권리구제	86	164	120	105	146	105	726
권고	13	27	16	15	30	5	106

- 조치 현황

처리										
구분	진행 중	종 결 (조례 49조)								계
		각하 (조례 47조)	권고 (조례 49조)	분쟁 조정 (학교 조치)	민원 답변	기각	취하 (중지)	기타 (회신)	소계	
2018	0	19	13	17	10	12	11	4	86	86
2019	0	15	27	36	15	25	41	5	164	164
2020	0	4	16	21	12	4	12	51	120	120
2021	0	5	15	35	21	4	14	11	105	105
2022	0	12	30	63	18	3	19	1	146	146
2023	32	6	5	33	12	1	16	0	73	105
<b>누계</b>	<b>32</b>	<b>61</b>	<b>106</b>	<b>205</b>	<b>88</b>	<b>49</b>	<b>113</b>	<b>72</b>	<b>694</b>	<b>726</b>

○ 2021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 대상학교: 52개교(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31개교)
- 컨설팅 내용: 학생생활규정 중 속옷 등 복장 관련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정 안내
- 실시결과: 생활규정 개정 52개교(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31개교)

구 분		컨설팅 대상	학생생활규정 개정 현황('22. 3. 11. 기준)	
			속옷 관련 규정 삭제 완료	속옷 관련 규정 개정 예정
총계	1단계	31개교	31개교	0개교
	2단계	21개교	21개교	0개교
	계	52개교	52개교	0개교

○ 2022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 대상학교: 61개교(중학교 23개교, 고등학교 38개교)
- 컨설팅 내용: 학생생활규정 중 두발, 염색, 파마 등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정 안내
- 실시결과: 생활규정 개정 33개교(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21개교)

구 분		컨설팅 대상	컨설팅 결과 (2022. 12. 31. 기준)	
			권고이행 또는 개정	규정 개정 예정
총계	1단계	31개교	29개교	2개교
	2단계	30개교	4개교	26개교
	계	61개교	33개교	28개교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항목	최근 3년 예산 현황		
	2023	2022	2021
학생인권 매뉴얼 개발 및 보급	0	75,600	84,700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0	3,200	8,500
합계	0	78,800	93,200

## 향후 계획

- 학교 현장 중심의 권리구제 사안 처리 강화 추진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컨설팅 지속 추진



##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

### □ 성과

- 교육공동체 인권교육 역량 강화 및 인권감수성 향상
  - 연수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높은 만족도
  - 교육 수요자의 지속적인 인권교육 관련 연수 확대 운영 요구
- 자치법규 및 정책(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확대
  -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전면 시행 및 정책사업 평가 확대
- 학생인권침해 사전 예방
  - 학생인권 사안에 대한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통해 사전 침해 예방
  -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 홍보를 통해 인지도 향상

### □ 한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교권과 학생 인권이 성공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학생 인권 교육 내용·콘텐츠 개발과 연수 확대 필요
- 학생인권영향평가 활성화를 통한 인권행정 실현 필요
  - 정책(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이해도 부족
- 학생인권 권리구제 및 인권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홍보 필요
  - 학생인권 관련 법규 내용과 해설, 상위법령 및 근거 최신화 필요
  - 학생인권 침해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가이드 보급 필요

### □ 개선 방향

-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교육 강화
- 학생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인권 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지속적인 안내·연수를 통한 내실있는 제도 운영
- 학생인권 사안에 대한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통해 사전 침해 예방
-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게 하는 학생인권의 규범적 기준을 제시



## 서울 학생인권조례 현황 및 교육청 입장

### □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후속조치 경과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명 추진(6개월, '10.10.27 )
- 법제심의회, 법정 인원 충족(97,702명)으로 청구수리 결정('11.08.03)
- 주민발의안 시의회에 이송('11.09.30)
- 시의회 교육위·본회의 통과 ('11.12.19)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교육청, '12.01.26)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12.04.01)
-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공포(규칙 제822호, '12.06.22)
- 학생인권조례 공포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교과부→대법원, '12.01.26)
- “교과부장관과 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교과부→헌법재판소, '12.03.09)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공포·시행('13.03.21 조례5440호)
- 헌법재판소 (학생인권조례)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기각’ 판결('13.09.26)
- 대법원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 ‘각하’('13.11.28)
- 학생인권옹호관 설치('15.03.01)
- 학생인권 실태조사 실시('15.10.05)
- ‘학생인권의 날’ 지정(매년 1. 26, '15.12.10)
-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조례 제6608호, '17. 9. 21.) ⇒ 의원 발의  
\* 제5조 제3항 신설(차별적 언사 및 행동, 혐오적 표현)
-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17.12.18.)
- 서울특별시조례 제6793호, '18.1.4., 타법개정
-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조례 제7888호, '21. 3. 25.) ⇒ 의원 발의  
\* 제12조 제2항 단서 조항 삭제(복장에 대한 학교규칙으로 제한 규정)

###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 [참고1] 관계 법령

## □ 서울 학생인권조례 관련 판결례 (총 3건)

###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무효 확인 소송 청구

- 법원 및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640
- 사건명: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청구
- 사건개요: 교사, 학생으로 구성된 원고들이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 있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요하는 국가사무임에도 별도의 법령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조례를 피고는 제정·공포하였으므로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함
- 선고 : 2017. 9. 14. 각하

#### [판결 요지]

이 사건 조례의 각 규정들이 헌법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 데 불과한 이상, (조례) 규정들은 일반적·추상적 내용으로서 원고들의 권리를 새롭게 부여 내지 제한하거나 그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3조 제1항 위헌 확인 헌법소원

- 법원 및 사건번호: 헌법재판소 2017 헌마 1356
- 사건명: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제5조 제1항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3항(혐오표현, 2017.9.21. 신설), 제16조 제3항(종교의 자유)제5항,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 제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제49조 제5항 내지 제8항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가 기본권을 제한하고 관계인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여 헌법에 위반하였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 청구인: ○○○ 외 22명
- 선고: 2019. 12. 11. 합헌 결정

### [판결 요지]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추상적으로 선언한 규정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게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서울특별시 내 각급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 선언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하여 마련한 학교 운영 기준 중 하나로 위와 같은 법률상 근거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 학생인권교육센터 예산지원 중지 소송

- 법원 및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47044  
(대법원 2021두 59663은 상고 기각)
- 사건명: 학생인권센터 예산지원 중지 등 주민소송
-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조례 무효 확인 청구 등
- 청구인: ○○○ 외 4명
- 선고: 2021. 11. 18. 각하

### [판결 요지]

이 사건 조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불과하여,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 진행 현황

- 2022. 8. 18. 폐지청구인 명부 제출(64,368명)
- 2023. 2. 13. 서울시의회 주민청구 수리 (44,856명 유효서명)
- 2023. 3. 13.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서울시의장)
- 2023. 3. 27.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서울시교육청) : 현행유지 입장

- 2023. 4. 5.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수리 및 발의 무효 확인 소 제기(시민단체)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청구의 대상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과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2023. 4. 25.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교육위원회 회부: 보류
- 2023. 8. 14.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추진 발표 (서울시교육청): 책무 조항 개정
- 2023. 8. 2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조례」 발의 (채수지 의원 등 67명)
- 2023. 8. 2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발의 (김혜영 의원 등 67명)
- 2023. 9. 5.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공청회(교육위원회)
- 2023. 10. 17.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출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의회)

##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에 대한 교육청 입장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임
-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장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법률적, 교육적,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사안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임
-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동성애 조장, 교권 추락 원인 제공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오해와 편견임. 교육의 기회를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학생인권 조례의 취지를 ‘동성애 부추기기’로 오해한다면, 우리 사회의 인권 관련 법규와 조례 대부분을 폐지해야 하는 모순이 생김

- 폐지조례안 청구이유는 ①지방자치법 위반이나 ②행정규제기본법 위반, ③종교와 양심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④종립학교의 종교 교육의 자유 침해, ⑤부모의 양육권 침해, ⑥동성애, 혼전 성행위(임신, 출산)의 유해성과 올바른 성윤리 대한 교육이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부분, ⑦청소년의 성전환 및 에이즈 증가 등 피해 발생, ⑧교육기본법과 상충되는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 야기함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나 법원의 법률 판단을 받은 사항으로, 같은 이유로 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조례 폐지 청구의 부당성은 이미 서울시의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2023. 4. 25.)도 자세히 지적한 바 있음

#### 【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 】

- 법률유보원칙 위배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9.14. 선고 2017구합88640 판결)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무효확인 청구’ 판결 등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동 조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학생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일 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위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국가사무라는 주장

- 헌법재판소(2019.11.28. 선고 2017헌마1356 결정)와 법원(대법원 2015.5.14. 선고 2013추98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범위에 있는 자치사무로, 교육감의 관장 사무라고 판시

#### 【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

- 학생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 등 관련 :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9.14. 선고 2017구합88640 판결, 2021.5.27. 선고 2020구합6446 판결)은, 학생인권 사무는 교육감의 관장사무이고, 학생인권 옹호관의 경우 시정 권고 외에 어떠한 제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함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생인권옹호관의 과도한 직권조사로 인한 피해와 그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은 별도의 보완책 마련 필요 주문(서울행정법원 2020.6.19.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 그러나 9년 동안 3건에 불과

#### 【 기본권(표현·종교의 자유, 부모의 양육권) 침해 】

(혐오표현) 헌법재판소(2017헌마1356)에서 민주시민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규제의 필요가 있다고 판시

(양육권) 조례에 학부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교육기본법과  
민법에 따라 침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 교육기본법과의 상충 】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 및 징계 규정 없음 주장) 조례에 직접적으로  
학생에 대한 징계 관련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는  
것에는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학생인권조례에는 책임과 의무 조항 있음(타인의 인권 및 교사의 수업권,  
학교규범을 준수한 의무)

- 학생인권조례는 차별시대를 끝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구현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19년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차별에 대한 경험은 2015년 대비 22.7% 에서 6%로 감소하였고, 학생생활규정에 학생의견을 반영하는 비율은 86.5%로 증가하고, 두발 등 개성 실현을 보장하는 비율도 94%에 이르는 등의 변화들이 있었음. 특히 학생들이 체감하는 인권이 보호받고 있다는 효능감도 70.7%로 나타나는 등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
-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보다는 **학생인권조례의 원안을 유지하면서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자 함**.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학생의 권리에 따르는 책무성을 보강하여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들을 수용하여 일부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음(2023. 10. 17.)

### □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학생의 책무 조항이 있으나, 최근의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책무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붙임 입법안 참조)

-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받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음
  - ⇒ 교육활동 침해 원인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 △각종 막무가내식 민원전화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 △학생의 폭력 등 다양함. 이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민원 대응 체계, 문제적 상황에 대한 생활지도 지원 체계, 아동학대죄의 과잉 적용 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개선 방법 찾을 수 있음. 교육활동에 대한 권리와 학생인권은 상호 협력의 관계이지 서로 양립하거나 두 권리가 충돌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함

## □ 학생인권의 성과

- 학생들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효능감 증가(초·중·고 64.2% -> 70.7%)
- 체벌 및 언어폭력 경험 감소(초·중·고 22.7% -> 6%)
- 학교 규칙·규정 재·개정시 학생 의견 반영 증가(초·중·고 67.3% -> 86.5%)
- 두발자유화 및 공론화 등을 통한 개성실현 보장 (중·고 56.9% -> 94.6%)

##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 제안이유

현행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3, 2023. 6. 27. 신설)의 개정에 따른 시대적·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명시(안 제1조)
-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안 제4조의2)
-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음을 명시(안 제25조제5항)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보장함”을 “보장하고,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학생의 책임과 의무) ①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된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된다.

③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2.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3.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금지
4.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5.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6. 흥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제2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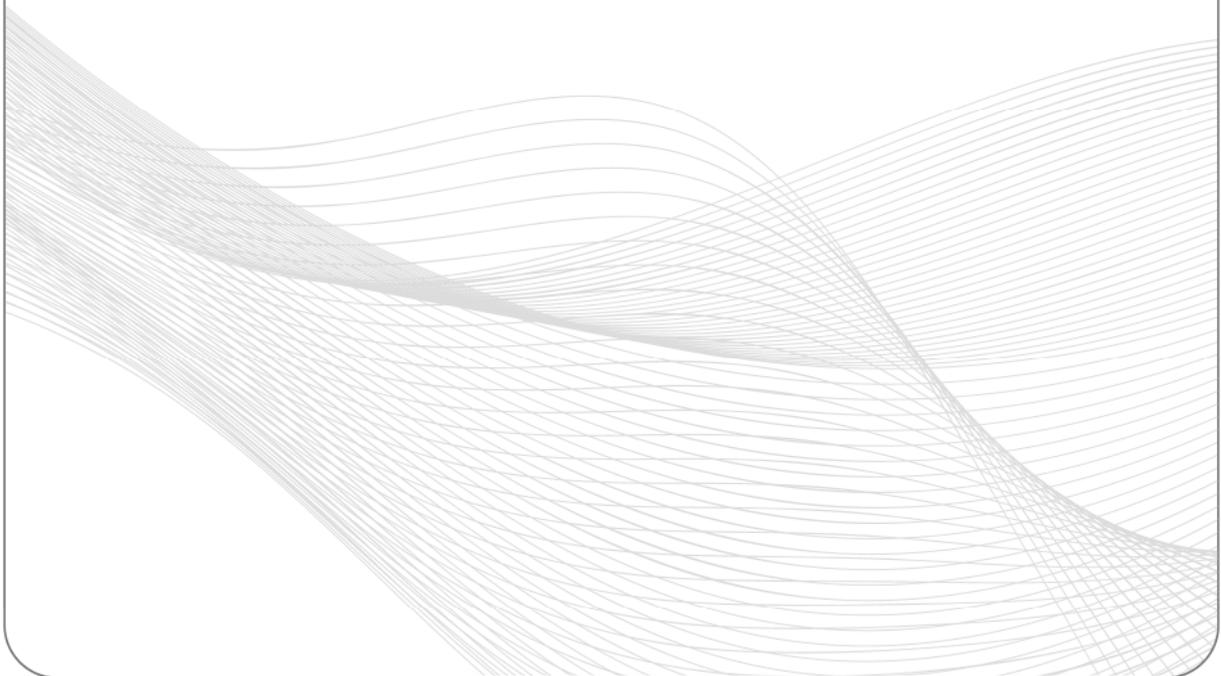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u>보장함</u>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보장하고,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u>----- ----- ----- -----.</p>
<p>제4조(책무) ① ~ ④ (생략)</p> <p>⑤ <u>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⑥ <u>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u></p>	<p>제4조(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u>&lt;신 설&gt;</u></p>	<p>제4조의2(학생의 책임과 의무) ① <u>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u></p> <p>② <u>이 조례에서 규정된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된다.</u></p>

현행	개정안
<p>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 ④ (생략)  <u>&lt;신설&gt;</u></p>	<p>③ <u>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u></li> <li>2. <u>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u></li> <li>3. <u>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금지</u></li> <li>4. <u>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 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u></li> <li>5. <u>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u></li> <li>6. <u>흥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u></li> </ol> <p>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u></p>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 사업 개요

#### ○ 목적

- 학생 노동인권교육을 통한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학교 노동인권교육 내실화
-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한 노동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 ○ 주요 내용

- 학생과 교원 노동인권교육 내실화
-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 노동인권교육 지원체계 운영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 시기	물량
노동인권증진지원	연중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150학급) 노동인권 체험 교원 연수(8회) 학교 노동인권교육 교원지원단 운영(4회)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운영(4회)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주요사업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최근 3년간 예산현황		
	2023	2022	2021
노동인권증진지원	0	310,438	300,115
합계	0	310,438	300,115

# 1

##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노동인권증진지원)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중·고등학교 학생 및 초·중등 교원
- 주요내용: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 □ 사업 현황

- 학생과 교원 노동인권교육 내실화
  -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운영
    - (목적) 특성화고를 비롯한 전환기 중·고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통한 일하는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인권 감수성 증진
    - (기간) 2023. 9월~12월
    - (대상) 중·고등학교 학생
    - (횟수) 중·고 150학급(회)
    - (방법) 한국공인노무사회 협력사업 운영
    - (내용) 청소년 노동관계법, 노동기본권, 노동의 가치, 직업윤리 등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노동인권교육 진행
  - 노동인권 체험 교원 연수
    - (목적) 교육과정 연계 체험형 노동인권 연수를 통한 교원의 노동인권 교수 학습 역량 강화
    - (기간) 2023. 5월(상반기), 10월~11월(하반기)
    - (대상) 초·중등교원
    - (횟수) 상반기 4회, 하반기 4회
    - (방법) 전태일기념관 협력사업 운영
    - (내용) 전태일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노동인권의 길' 탐방연수

- (교육부 특교사업) 노동인권교육 수업자료 활용 시도교육청 선도교원 직무연수
  - (목적) 17개 시도 공통 지도자료에 대한 시도교육청 선도교원 활용연수
  - (기간) 2023. 1월(1기), 7월 ~ 8월(2기)
  - (대상) 17개 시도교육청 추천 중등 선도교원
  - (횟수) 2회
  - (내용) 교육부 노동인권 수업자료에 대한 활용 연수
- 학생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 (교육부 특교사업)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교원 연수 동영상 개발
    - (목적)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의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관련 교수학습 지원
    - (기간) 2022. 11월 ~ 2023. 2월
    - (대상) 17개 시도교육청 중등교원
    - (물량) 동영상 1종
    - (방법) 용역(수의계약)으로 개발
    - (내용) 2022년 특교사업으로 보급한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활용 교원 연수 동영상 개발
  - (교육부 특교사업) 노동인권교육 수업자료 개발·보급
    - (목적) 학생들의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통해 자신의 권리·의무,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 개발
    - (기간) 2022. 8월 ~ 2023. 8월
    - (대상) 17개 시도교육청 중등교원
    - (물량) 지도자료 2종
    - (방법) 용역(제한경쟁입찰)으로 개발(경인교대 산학협력단)
    - (내용) 중고 노동인권 관련 미디어리터러시 및 사회참여 프로젝트 수업 자료 및 활동지 개발
-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 (서울시협력사업)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 (목적) 현장실습 전 노동관계법 교육을 통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 (기간) 2023. 3월~12월
- (대상)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3학년(80교)
- (내용) 서울시 및 자치구 위탁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강사 파견을 통한 현장 실습 전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지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협력사업) 노동교육 콘텐츠 전시회
  - (목적) 노동교육 콘텐츠 전시회 개최를 통한 국내 노동교육 기관 및 단체 등 유관기관간의 교류의 장 형성
  - (기간) 2023. 9월
  - (대상) 유관기관 노동인권교육 담당자, 강사단 및 교원
  - (주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주관),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노동권익센터, 부산노동권익센터,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내용) 노동인권교육 관련 각 유관기관 개발한 지도자료 및 콘텐츠 전시회
- 노동인권교육 지원체계 운영
  - 서울시교육청 제3기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운영
    - (목적)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한 노동인권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의견 청취 및 정책반영
    - (기간) 2023. 1 ~ 12월
    - (대상) 자문위원 15명
    - (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의한 정책자문
  - 학교 노동인권교육 교원지원단 구성 및 운영
    - (목적)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 노동인권교육 기획·운영 및 콘텐츠 개발, 노동인권교육 수업사례 나눔
    - (기간) 2023. 3 ~ 12월
    - (대상) 초·중등교원

- (횟수) 워크숍 연 2회 이상
- (내용) 노동인권교육 수업사례 발굴 및 나눔을 위해 '노동인권교육 교원 지원단' 운영 지원

## □ 추진 실적

- 학생과 교원 노동인권교육 내실화
  -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운영(150학급, 진행 중)
    - 한국공인노무사회 협력사업으로 운영
  - 노동인권 체험 교원 연수(상반기 초·중등 교원 69명)
    - 전태일기념관(서울시 위탁기관) 협력사업으로 운영
  - (교육부 특교사업) 노동인권교육 수업자료 활용 시도교육청 선도교원 직무연수(1기 34명, 2기 27명)
- 학생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 (교육부 특교사업)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교원 연수 동영상 개발(동영상 콘텐츠 1종, 5차시)
  - (교육부 특교사업) 노동인권교육 수업자료 개발·보급(교사용 지도서 및 학생용 활동지, 공통교안 PPT)
-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 (서울시협력사업)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23년 진행중)
- 노동인권교육 지원체계 운영
  - 서울시교육청 제3기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운영(3회)
    - 위원명단 【붙임】 참조
  - 학교 노동인권교육 교원지원단 구성 및 운영(13명, 워크숍 2회)

□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 주요사업 추진실적(2023. 9. 30. 기준)

세부사업	추진실적			비고
	2023	2022	2021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152학급 (3,950명)	130학급 (3,358명)	한국공인 노무사회 협력사업 진행 중	21 ~ 22년 위탁운영
노동인권 체험교육 프로그램(학생)	-	14회(373명)	-	- 21년 코로나로 사업변경 (콘텐츠개발) 추진 - 23년 정책정비 사업 폐지
노동인권 교원연수	62명	115명	130명	
학교로 찾아가는 교원 노동인권교육	38교 (1,846명)	28교 (1,435명)	-	23년 사업 폐지
지도자료 및 콘텐츠 개발	5종	6종	3종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26,987명	28,288명	진행 중	서울시 협력사업
노동인권교육 자문위원회	4회	4회	3회	
학교 노동인권교육 교원지원단 운영	2회 (21명)	2회 (18명)	2회 (13명)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1회			조례에 의해 매 3년마다 실시

○ 지도자료 및 콘텐츠 개발 연차별 목록

연도	개발 지도자료 및 콘텐츠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교과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1종)</li> <li>- 도덕과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1종)</li> <li>- 해외(영국 및 프랑스) 노동인권 지도자료 분석을 교수학습 지도자료 I (1종)</li> <li>-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꿀팁 번역본(영문 및 중문, 1종)</li> <li>- 랜선으로 만나는 노동인권 체험교육 동영상(1종)</li> </ul>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과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1종)</li> <li>-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1종)</li> <li>- 해외(독일) 노동인권 지도자료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 지도자료 II(1종)</li> <li>- 직업계고 노동인권교육 공통교안 및 해설서 개정(1종)</li> <li>- (특교사업)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2종)</li> </ul>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교사업)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교원 연수 동영상(1종)</li> <li>- (특교사업)노동인권교육 수업자료(2종)</li> </ul>

○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현황 (2023. 9. 30. 기준)

연번	협약명	체결일자	체결기관	비고
1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서울노동권익센터 업무협약	2015.10.22.	서울노동 권익센터	서울시 위탁기관
2	선진노사문화 정착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한국고용노동교육원 업무협약	2018.11.14.	한국고용 노동교육원	「한국고용노동 교육원법」에 의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3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	2019.5.21.	한국공인 노무사회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법정기관
4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노동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업무협약	2021.11.3.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서울시 위탁기관

**조례 제·개정 현황**

조례명	제·개정일	주요내용	비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조례	2018.1.4. 제정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의원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조례	2021.7.22. 일부개정	-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제1조의2) 및 노동인권실태조사 규정 신설 (제4조제3항) - 각급 학교에 노동인권교육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 신설 및 특수학교 학생의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제8조제1항~제2항) 등	의원발의

※ 2023. 9. 30.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시도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 제정 및 운영 중

**예산현황**

(단위: 천원)

사업항목	최근 3년 예산 현황		
	2023	2022	2021
노동인권증진지원	0	310,438	300,115
<b>합계</b>	<b>0</b>	<b>310,438</b>	<b>300,115</b>

※ 23년도 특교사업은 전년도 특별교부금 사고이월액으로 집행, 자체사업들은 비예산사업

**향후 계획**

-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 2023. 12월
- 노동인권 체험 교원 연수: 2023. 10 ~ 11월
- (서울시협력사업)특성화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 2023. 12월
-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운영: 2023. 12월
- 학교 노동인권교육 교원지원단 워크숍: 2023. 10월~11월



##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

### □ 성과

#### ○ 학교현장 맞춤형 노동인권교육 지원

- 학교 현장 맞춤 및 균형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외부기관 강사에서 교원 중심으로 교육 시행 노력
- 교원 중심의 노동인권교육 시행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노동인권 지도자료(교사용 지도서) 개발 및 보급
- 학교 수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2년 연속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의 주관교육청으로서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수업자료 개발 보급
  - ※ (2022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2023년) 노동인권교육 수업자료 개발
- 학교 노동인권교육 교원지원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수업사례 나눔 및 노동인권교육 관련 정책효능감 재고

#### ○ 노동인권교육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를 통한 유관기관(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의 일상적 협업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 ※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제9조 제2항: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청,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서울시 위탁기관(서울노동권익센터, 전태일기념관) 및 법정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한 교육지원

### □ 한계

- 최근 ○○초 사안 이후 교권 증 하나로 교원의 노동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대두

- 감정노동자로서 교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정책 및 사업 미흡
- 학교 현장의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사업 수요는 증대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부족으로 학교 지원 미흡
  - (2021년) 271학급 신청, 152학급 교육시행(신청대비 시행률 55.3%)
  - (2022년) 536학급 신청, 130학급 교육시행(신청대비 시행률 24.3%)
  - (2023년) 645학급 신청, 150학급 교육시행(신청대비 시행률 23.3%)

## □ 개선 방향

- 2023년 ‘교원의 감정노동 보호와 치유 연수’를 시작으로 교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연수 등 관련 사업의 단계적 확대 노력과 더불어 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정책 대상을 학생에서 학교 구성원으로 확대 검토
  -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의회와 협의하여 적극적 검토
-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에 대한 학교 현장의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지원 노력

## 【붙임】 서울특별시교육청 제3기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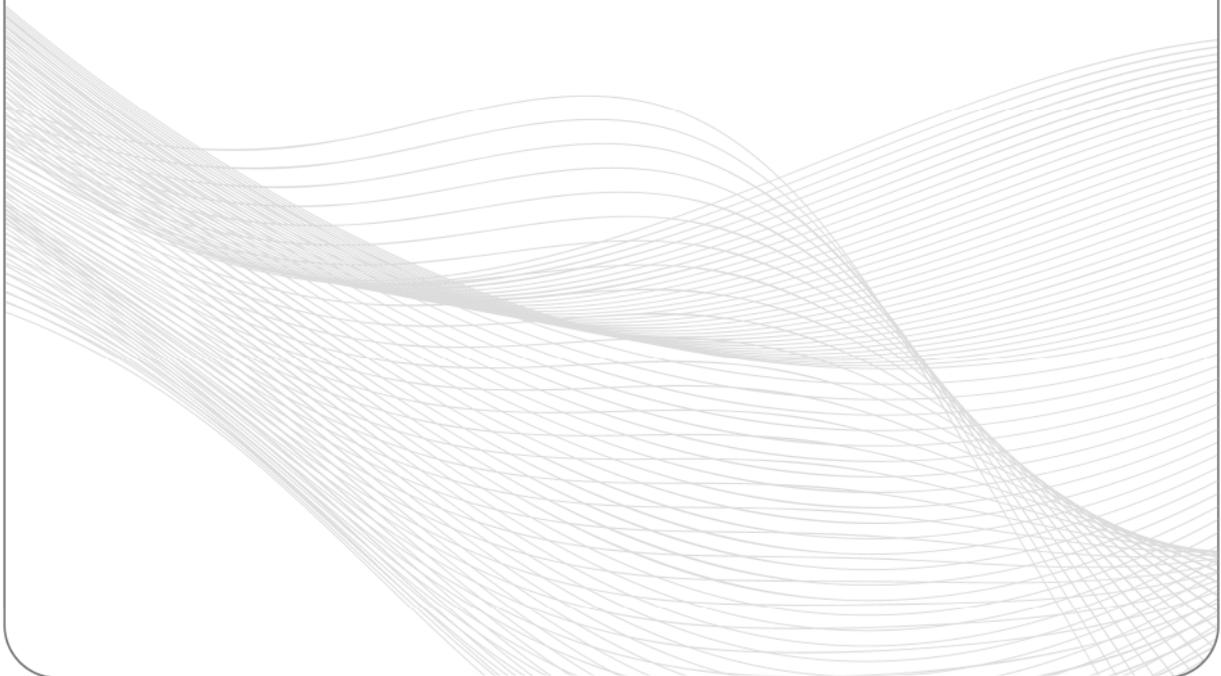
(영역별 가나다순)

구분	연번	이름	성별	소속	직위	비고
학계 및 교육계 관련자 (4명)	1	도○○	여	성산중학교	교감	
	2	안○○	남	강서공업고등학교	교사	
	3	오○○	남	장충고등학교	교사	
	4	최○○	여	이화여대 사회과교육과	부교수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추천 (5명)	5	박○○	여	서울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6	안○○	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팀장	
	7	이○○	여	한국공인노무사회	운영위원	
	8	이○○	여	서울노동권익센터 (시민권익실)	실장	부위원장
	9	장○○	여	전태일기념관	사무국장	
시의장 추천 (1명)	10	박○○	남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시의원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5명)	11	박○○	남	매일노동뉴스	회장	위원장
	12	백○○	남	한국노총서울본부	사무처장	
	13	신○○	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14	안○○	남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15	이○○	남	경제민주화시민연대	공동대표	

※ 임기: 2023. 2. 1. ~ 2025. 1. 31.(2년)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사업 개요

- 조례 제정 목적: 의안번호 제1708호(2017. 4. 3. 발의, 김미경 의원)
  - 수업결손 등으로 인한 학생선수의 학습 부진 해소
  - 학생선수를 폭력 등 비인권적인 훈련 및 학교생활 환경으로부터 보호
- 조례의 주요 내용: 교육감의 책무성 강화
  - (제4조)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 (제5조)학생선수 인권보호 시책 추진 및 실태 조사 실시
  -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교육 및 연수
  - (제7조)학생선수 대상 학습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지원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 시기	물량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6~11월	모든 학생선수(총 7,569명 참여)
학생선수 학습 지원	연중	40교(총 64교 지원, 160% 달성)
학생선수 인권교육 지원	연중	80교(총 86교 지원, 108% 달성)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주요사업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최근 3년간 예산현황		
	2023	2022	2021
학생선수 학습 지원	80,000	80,000	40,000
학생선수 인권교육 지원	80,000	80,000	40,000
합계	160,000	160,000	80,000

# 1

##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교육부 주관 사업 연계)

학생선수들의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 학생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제12조·제12조의3
- 사업대상: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 선수 대상
- 주요내용: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폭력피해 실태 조사 및 후속 조치

### 사업 현황

- 기본 계획 수립 및 조사 참여 안내: 2023.6월
-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안내: 2023.9월
- 단위학교별 후속 조치: 2023.9 ~ 11월
- 결과 보고 (학교→교육지원청→본청→교육부): 2023.11월

### 추진 실적

- 서울 학생선수 총 7,569명(초1,832명, 중 3,349명, 고2,388명) 참여

### 예산 현황: 없음

### 향후 계획

- 학교폭력 발생 시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사안 처리: 연중
  - ※ 학생선수가 폭력의 피해학생이 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사안 처리, 가해자가 학교운동부지도자인 경우 학교장이 직접 징계하고 해당 학년도 근무평가에 반영 및 체육회(종목단체)에 통보(신분 및 자격 상 징계 요구)

## 2

## 학생선수 학습 지원

다양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 및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및 제11조
- 사업대상: 학교운동부(체육특기학교) 희망교 중 신청·선정교
- 주요내용: 학교별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 사업 현황

- 기본 계획 수립 및 희망교 신청 안내: 2023. 3월
- 신청서 수합 및 지원 대상교 선정: 2023. 4월
- 지원 대상교 안내 및 예산 교부: 2023. 5월
- 단위학교 프로그램 운영: 2023. 5 ~ 11월
  - 독서교육 등의 인문학적 소양 교육 프로그램 등
  - 학생선수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등
- 운영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2023. 11월

### □ 추진 실적

- 총 64교(초26교, 중22교, 고16교) 선정 및 운영비 교별 1,250천원 지원
  - 40교 선정 계획이었지만, 총 64교가 신청하여 신청한 모든 학교를 선정하여 예산 지원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최근 3년간 예산현황		
	2023	2022	2021
학습지원 운영비	80,000	80,000	40,000
합계	80,000	80,000	40,000

향후 계획

- 단위학교별 프로그램 운영: 연중
- 우수 사례 공유 및 2024학년도 계속 운영

### 3

## 학생선수 인권교육 지원

학교장의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제11조·제12조의3
- 사업대상: 학교운동부(체육특기학교) 희망교 중 신청·선정교
- 주요내용: 학교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 교육부 학생선수 대상 인권교육 관련 지침: 연 4시간(학기별 1회), 선수와 지도자 분리

### □ 사업 현황

- 기본 계획 수립 및 희망교 신청 안내: 2023. 3월
- 신청서 수합 및 지원 대상교 선정: 2023. 4월
- 지원 대상교 안내 및 예산 교부: 2023. 5월
- 단위학교 프로그램 운영: 2023. 5 ~ 11월
  - 학생선수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 스포츠 인권(가혹행위, 도핑, 스포츠윤리 등) 교육
- 운영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2023. 11월

### □ 추진 실적

- 총 86교(초33교, 중29교, 고24교) 선정 및 운영비 교별 930천원 지원
  - 80교 선정 계획이었지만, 총 86교가 신청하여 신청한 모든 학교를 선정하여 예산 지원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최근 3년간 예산현황		
	2023	2022	2021
인권교육지원 운영비	80,000	80,000	40,000
합계	80,000	80,000	40,000

향후 계획

- 단위학교별 프로그램 운영: 연중
- 우수 사례 공유 및 2024학년도 계속 운영



##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

### □ 성과

- 학교운동부 내 폭력피해 예방
  - 학생선수 간 학교폭력 관련 예방교육 활성화로 폭력을 지양하는 학교운동부 문화 형성
  - 관행적·음성적인 지도자의 학생선수 대상 폭력 예방
- 학생선수 대상 학습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에게 특화된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 학생선수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 감소: 2022학년도 1학기 11.9%에서 2022학년도 2학기 11.7%로 0.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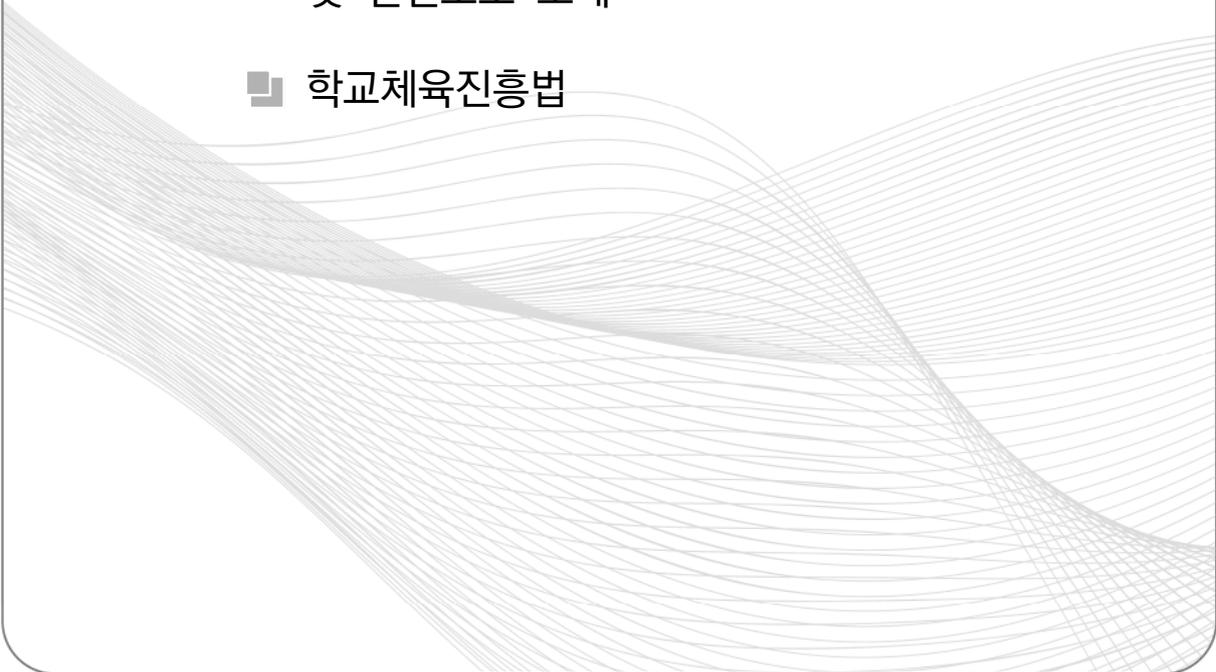
### □ 개선이 필요한 부분

- 학습지원 사업의 방향 제시
  - 교사와 학생이 대면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위주의 학습지원 사업내용 획일화 우려
- 기운영 중인 유사 사업과의 내용 또는 절차의 중복 가능성
  - 단위학교 내에서 기존 일반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선수 대상 프로그램 운영이 중복되어 담당자의 업무량 과중함

### □ 개선 방향

- 학생선수 대상 별도의 학습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양, 일반 학생 대상 프로그램과 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지원 필요
- 학생선수 대상 학습 지원 사업 운영 시, 독서 및 글쓰기 교육 권장

## [참고]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학교체육진흥법
-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21.3.25.] [서울특별시조례 제7888호, 2021.3.2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민주시민생활교육과), 02-399-908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2장 학생인권

###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9. 21.>

###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 제7조(위협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 교직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25.>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에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사·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의무교육과정에서의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 교육청, 교육지원청 그 밖의 관계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 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의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인권에 관한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9조제2항의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 홍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와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명 이상
  2. 학생참여단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명 이상
  3.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이상
  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 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⑦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지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3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4회 이상
  2. 임시회 :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위원회의 간사는 제34조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담당한다.

-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학생참여단)**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참여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참여단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선발할 수 있다.
- ④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8.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⑤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참여단을 둘 수 있다.

###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및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 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4.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참여단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제40조(보고의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겸직의 제한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며, 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4절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

**제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1.4.>

③ 센터에는 사무직원을 둔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교육감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 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위원회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제4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6. 교육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7.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제45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의 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공청회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7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교육지원청 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③ 제2항의 학생인권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제48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7조제1항의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이하 "피해당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47조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가해자나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이나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⑧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 및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50조(비밀유지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구성원은 제48조제1항의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장 보칙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21. 7. 22.] [서울특별시조례 제8119호, 2021. 7. 2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민주시민생활교육과), 02-2282-837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원칙)**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노동인권 옹호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1.7.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22.>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일반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7. “직업교육훈련”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8.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내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29조에 따라 수립된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7.22.>

**제5조(자문)** 교육감은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노동인권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제공)**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1. 노동인권 보장 및 구제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노동인권 관련 구제 방법이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노동인권교육)**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7.22.>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직업교육훈련 혹은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7.22.>

**제9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청,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하는 교원들을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직업교육훈련 혹은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담당 교직원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7.2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119호, 2021.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2019. 5. 16.] [서울특별시조례 제7126호, 2019. 5. 1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체육건강예술교육과), 02-399-957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선수의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획수립)**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5.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신설 2019.5.16.>
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9.5.16.>]

**제5조(인권보호)**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5.16.>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도핑 방지 교육)** 교육감은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8.1.4.>

**제7조의3(폭력 예방 교육)**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5.16.>

**제8조(위탁교육)**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하여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126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 044-203-6990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15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클럽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3. 3. 14.>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설 2020. 10. 20., 2023. 3. 14.>

⑤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20.>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평가결과 등록 및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 ④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授受)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⑥ 교육감은 제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7. 4. 18.]

-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10. 20.]

-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신설 2016. 2. 3.>

④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제17조(학교체육진흥원)** ①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2.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생 체력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4.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종목·평가기준 및 시스템 개발·운영
5.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원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사회와 협력)**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